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17회 임시회 (2018. 1. 29.)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인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8. 1. 17. (수)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3. 운영위원회 회부일자

- 2018. 1. 18. (목)

4. 관련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

5. 개정이유

- 최근 자녀를 낳지 않거나 1명만 출산하는 경향에 따라 이에 우리 구도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아이 낳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급기준을 상향하고, 출산축하금 신청방법 확대(원스톱서비스)등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 함.

6. 주요 개정내용

가. 다자녀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급기준 상향 (안 제4조)

- ▶ 둘째 아(兒) 15만원 ⇨ 50만원, 셋째 아(兒) 30만원 ⇨ 100만원, 넷째 아(兒) 100만원 ⇨ 300만원

나. 출산축하금 신청방법 확대로 편익 증진 (안 제5조제2항)

▶ 출산축하금 신청 시 정부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서 병행 사용

다. 신청 시 구비서류 정비 (안 제5조 제3항)

▶ 거주기간 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7. 검토의견

○ 최근 자녀를 낳지 않거나 1명만 출산하는 경향에 따라 이에 우리구도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아이 낳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급기준을 상향하고, 출산축하금 신청방법 확대 등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는 다자녀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급기준을 둘째 아 50만원 셋째 아 100만원, 넷째 아 300만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 안 제5조 2항은 출산축하금 신청 시 정부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서를 병행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였으며,

○ 안 제5조3항은 출산축하금 신청 시 거주기간 증빙서류로 혼인관계증명서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구비서류를 정비하였음.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인구절벽이라는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수요자 중심의 출산 장려 시책을 통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극복 동참에도 부합되는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자치구별 출산지원금 지급 비교 현황

(`18. 1. 22. 現在)

(단위: 천원)

구 분	조례개정 후 지급액	조례개정 후 마포구 순위	자치구 (최고금액)	자치구 (최저금액)
첫째아	100	2위(6) - 마 포 구, 용 산 구, 성북구 - 서대문구, 영등포구, 강동구	종로구 (300)	- 지급 자치구: 8개 (중구: 200) - 미지급 자치구: 17개
둘째아	500	2위(8) -마포구, 종로구, 중랑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종로구, 중구 (1,000)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서대문구, 관악구, 강동구 (200)
셋째아	1,000	3위(5) - 마포구, 종로구, 중랑구 - 서초구, 강남구	영등포구 (3,000)	관악구 (300)
넷째아	3,000	2위(3) - 마포구, 중구, 강남구	영등포구 (5,000)	은평구, 서대문구, 관악구 (500)
다섯째 이상	5,000	1위(4) - 마포구, 중구, 광진구, 영등포구	마포구, 중구 광진구, 영등포구 (5,000)	서대문구 (500)

※ 서울시 자치구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순위 (`2018년 1월 현재)

마포구 출생아 및 출산율 현황

출처: 통계청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출생아 수(명)	3,797	3,320	3,373	3,626	3,392
합계출산율(%)	0.991	0.892	0.915	0.986	0.945

※ 합계출산율 :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출생아 수
-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 15~49세 합계 출산율

자치구별 출산지원금 지급 운용 현황

('18. 1. 22 現在)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도입 시기	자녀수					비고 (조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이상	
1	종로구	2008		500	1,000	1,000	1,000	출산일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 '18년도 7월부터 변경 시행 예정임
			300	1,000	1,500	1,500	1,500	
2	중구	2007	200	1,000	2,000	3,000	5,000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3	용산구	2009	100	200	500	1,000	1,000	출생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4	성동구	2007	-	200	500	1,000	1,000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신생아의 부모는모 ※ '18년도 7월부터 변경 시행 예정임
				200	1,000	1,500	1,500	
5	광진구	2008	-	300	500	1,000	5,000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6	동대문구	2008	-	300	500	1000	1000	출생일로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7	중랑구	2009	-	500	1,000	2,000	2,000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8	성북구	2008	100	300	500	1,000	1,000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18년 1월부터 첫째 양육수당지급
9	강북구	2007	-	300	600	600	600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의 부 또는 모
10	도봉구	2008	-	300	500	1,000	1,000	출산일 현재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
11	노원구	2008	-	200	500	1,000	1,000	출생일 현재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12	은평구	2009	-	250	350	500	1,000	출생일 현재부터 출산양육 지원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13	서대문구	2009	100	200	500	500	500	출생신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14	마포구	2011	100	500	1,000	3,000	5,000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15	양천구	2006	-	500	700	1,000	2,000	출산전부터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16	강서구	2008	-	300	500	700	1,000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기간동안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
17	구로구	2010	-	300	600	2,000	2,000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18	금천구	2008	-	500	700	1,000	1,000	출생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자
19	영등포구	2008	100	500	3,000	5,000	5,000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거주한 부 또는 모
20	동작구	2009	-	300	500	1,000	1,000	출생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중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자
21	관악구	2008	-	200	300	500	1,000	출생일 현재부터 출산축하금 신청일까지 부모는 모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경우 지원
22	서초구	2007	-	500	1,000	1,000	1,000	출생일을 기준으로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중인 부 또는 모. 아이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23	강남구	2007	-	500	1,000	3,000	3,000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는모
24	송파구	2009	-	300	500	1,000	1,000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180일 이내 신청
25	강동구	2009	100	200	500	1,000	1,000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기간 동안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 첫째는 2017년도부터 지급

관 계 법 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혼인과 출산)

- ①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